

기안용지

문장번호	2244 2838	(전화번호)	42	권관규정	조	호	
차기기관		기안자	길	재		자	
시정일자	1967. 12. 8	구로정리코 유지부	시	장		결	
보존년한		기안일자	7	12	4	일	
보	제 2부시장		제 1부시장				
조	도시계획국장						
기	구로정리코장						
관	본시계장						
현	기록계장	사무국장	총무국장	법무관	건축국장	형정국장	
성	유신	각안장					
참	조	공고제	1호	발	경	서	
제	목	본시 계획 인가 및 여섯지 지정 공고					
제 1 안	너무결적						

1. 1.67 . 1.21 김신부 도시 제 10 포토 사업 실시 인가된 이후

도시구로정리 사업지구 ~~지정~~ 본시 계획을 도시구로정리 사업법 제 46조 규정의 의하여 본시 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공람 공고 를 서울특별시 공고 제 178 호 (67. 11. 16.)로 토지 소유자에게 14일간 공람에 공람된 후 첩 의견서의 같은 이의는 전하고 이유있는 사항을 수정하여 동법 제 47조 규정의 의한 본시 계획인가를 건축단 452.4 - 820 (67. 5. 26)로 서울특별시청에게 군함 취임 되었기에 인가를 품신하는 바 입니다.

2. 본지 기록입자의 본지 도시 소유자의 도시 사용 수익을 위하여
농법 제 56조의 규정 근거 인정사본 지점 농보노조입니다.

제 2 함

제목 ~~서울특별시 동부노지개발사업지구~~ ~~노지 기록입자~~ ~~지정~~ ~~공고~~
제목 ~~서울특별시 동부노지개발사업지구~~ ~~노지 기록입자~~ ~~지정~~ ~~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규약 동부노지구관리 지구내 ~~제정~~ ~~노지 기록~~
을 구상하기 사업법 제 4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부서로 같이 정할기 농지
관리 이 사항은 농법 제 56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하고 농법 제 57조 제 1항에
의한 사용 수익의 권한을 도시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부여 합니다.

남, 적지 ~~중사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본지본 사용 수익권수 없는 도지
는 공시 은을 및 다른 사유가 적소년 날로부터 사용 수익함.

2. 본지 이점의 지정서 및 지정도는 도시기록부 기록부나 또는 ~~청동~~
구정 ~~본부~~ 및 동부노지구관리 사업소에 비치하고 본지 소유자와 관계인
의 용람이 공함니다.

1967. 12. 1967. 12. 6

서울특별시 장

제 3 함

수신 수신처 상호 발송 사 장

제목 본지 이점지 지정 통보

1. 서울특별시 도시기록사본 규약 동부노지구관리 지구내에 있는 그하
의 소유 도시이 이하의 구상관리 사업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예정
지 지정사항 감악 본지는 자정하였기 농지 차오며,

2. 본지 이점지 차용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
부터 사용 수익의 권한은 행사할수 있으며.

3. 사업 인가일 원저 사모 또는 사실상 공중에 공개하고 있는 도서에 대하여는 구획정리 사업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세를 거부하지 아니 하였으며

4. 본지 예정지 지정서 및 지정부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부 또는 성동구청 오목고 및 동부 오지구획정리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어야 함이 바랍니다.

첨부. 1. 본지 예정지 지정서

2. 공고문 사본 1매.

제 4 안

수신 동부 오지구획정리 사업소장

방신 시 장

제목 위양 오지구획정리지구 본지 예정지 지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위양오지구획정리 지구 제 1차 본지 예정지를 법집 공고문과 같이 지정하고 관계 도서를 송부하니 관계업 및 오지 소유자에게 주지 시키는 동시에 공람에 공할것.

첨부. 1. 본지 예정지 지정서

2. 본지 예정지 지정도

3. 도지 송부

4. 공고문 사본

제 5 안

수신 성동구청장

방신 시 장

제목 위양오지구획정리 지구 본지 예정지 지정

1. 위양오지구획정리 지구내 제 1차 본지 예정지를 법집 공고문과 같이 지정하고 관계도서를 송부하니 수령일로부터 오지 소유자 함에 의하여 본지 예정지 지정 증명을 거부할것.

보 고 시

회양 퇴지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환지 계획공람 건
정수원 의견 처리 내용을 별첨과 같이 처리 하명하 보인

공람기간 자 1967. 11. 16) 14일간
지 1967. 11. 29

1967. 12.

지방토목 기사보

유 지



서울 특별 시장 키하

의 건 처 리 내 용

접수 연월일	계 출 연	계 출 연	내 용	원 인	처 리
			자양동 209-98 ~ 99 ~ 913		
67. 11. 20	이 종섭	구두	부 자양동 209-111 ~ 913 는 토지 소유권자가 상귀한바 개별 관리 요청.	토지 소유권자 계조사부(67. 6. 15)	등기 등본에 소유권 확인 함.
			자양동 211-1 ~ P 는 토지 소유권 자가 상귀한바 개별 관리 요청.	"	"
67. 11. 21	이 운산	"	상수 2가 182-15 416 과 상수 2가 182-25 427 는 토지 소유권자가 상귀한바 개별 관리 요청.	"	"
67. 11. 22	최 두원	"	자양동 223 과 자양동 236-2 (나)는 동일 소유권 자 인접 관리 요청	"	"
67. 11. 20	한	자회 조사	구와동 416-135 ~ 915 는 토지 소유권자 가 상귀함	"	등기소 등본에 소유권(67. 11. 재 확인후 번 이전 정정 함

경수전체현	제출인	제출방법	내 용	처리인	처리결과
			구의동 497의10	토지 소유권자	등기소 등기부대
			· · 의 P	재조사(62.6.15)	의한 소유권
67.11.20	한정석	가제 조사	는 토지 소유권자	이후 소유권자가	확인후
			상위 한바	이전 되었음.	정정함.
			개별 분지.		
			구의동 497의1		
			· 497의1		
			과 491은		
*	*	*	토지 소유권자가	*	*
			상위 한바 개별		
			분지		
			자양동 248의1		
			과 251은		
*	*	*	토지 소유권자가	*	*
			상위 한바 개별		
			환지		
			모전동 50의2		
67.11.27	조수영	구두	· 50의2		등기 등분배
			와 47의3		의한 소유권
			은 토지 소유권	*	
67.11.29	최복산	건의 (서명)	자가 상위 한바		확인후 정정함
			개별 분지 1필		

일시	내 용	원 인	처 리 결 과
	구의동 439의2 : 7P : 10	토지 소유권자 재조사(67.6.11)	등기 원상회복 소유권자 확인후
67.11.28	이종성 구두	각 반자는 토지 소유권자가 상위 한바 개발권이행	시 소유권자 확인 정정함.
	상수도가 1501 과 1494	토지 소유권자 재조사(67.6.15)	등기소 등기부예 의한 소유권
67.11.20	자재 조사	은 토지 소유권자 가 상위한바 개발 권리.	이후 소유권이 확인후 정정함.
	구의동 244의6 과 241의7	은 소유권자가 상위 한바 개발 권지.	
67.11.28	홍길영 최신 구두	구의동 51의2 반자는 양측 소유자 합의에 의한 위치 변경 요청 모건동 26의1 구의동 504는 인정되었는 관내 토지 조사 51의2가 위치 변경함에 토지의 이용도를 배 위치 변경이 가함.	건대 부지 중간에 위치한 토지로서 분 가 위하여 정지 권지 하보는 것임. 구의동 51의2에 연접 관계 하보는 것임. 구의동 51의2가 이동함에 인접도로 및 토지의 이용도를 보다 정정함.

접수번호	소재지	대상	내용	권리	처리결과
			자양동 218 호 218의2 은 비록지 된	전대 부지에 관한 토지로서 인접지의	토지 소유권자의 이의 존속에 의
9. 12. 1	최충산	이의	토지로서 토지 소유권자의 이의	토지 이동도를 고려 하여 비록지 하겠	하여 종전토지부 인정지로 귀치
	최충산	경정	경쟁에 의하여	은 것임	변경 하겠음
9. 12. 1	조수근		종전 토지 위치내		
	생명복		권자 요청		